

# 勞 動 法 制 動 向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  
서울시 마포구 백범로 88 (대흥동)  
(우: 121-726)

2016. 2. 15.  
【법 제 1 팀】 Tel. : 02-3270-7425/7327  
【법 제 2 팀】 Tel. : 02-3270-7319/7340  
Fax. : 02-3270-7431

2016 - 6 (2월 15일) 총3쪽

문서번호 : 2016-503

※ 주간 판례 동향의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I. 주간 법제 동향

### ① 발의된 법안

#### 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 18536(환노위) / 발의일 : 2016. 2. 4. / 대표발의 : 이인영(더민주)

#### ○ 주요 내용

- 가사사용인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배제 규정을 삭제함(안 제11조).

#### 2.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 18537(환노위) / 발의일 : 2016. 2. 4. / 대표발의 : 이인영(더민주)

#### ○ 주요 내용

- “가사근로자”를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근로계약을 맺고 임금을 목적으로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 “가사서비스”를 일반가사활동, 산후관리, 가정보육 및 가족 돌봄 등으로 정의함(안 제2조).
- 제공기관은 일정 기준을 갖추어 고용부장관의 인증, 손해배상보험에 가입, 가사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지급해야 함. 국가는 사회보험료 등을 지원할 수 있음.

## II. 주간 판례 동향

사무보조비 명목으로 매월 상당한 금액의 돈을 지급하도록 정한 단체협약 조항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대법원 2016.1.28. 2012두12457).

### 1. 사실관계

-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은 사무보조비 지급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2011년 2월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단체협약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림.
  - ※ 1992년 단협 체결 당시부터 노조는 사무보조비를 받아왔고, 2010년 8월 47개 업체와 맺은 단협에서 조합원 수에 따라 업체당 월 8만~15만원을 받기로 함.
  - ※ 사무보조비가 많게는 1년에 6,400만원을 넘었고, 노조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2009년 11.17%에 달함.
- 이에 노조는 투쟁의 산물이라며 시정명령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함. 1, 2심 모두 노조가 패소하자, 대법원에 상고함.

### 2. 판결요지

- 노조법 제81조 제4호 ‘사용자의 운영비 원조’를 금지하는 입법목적은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거나 어용화되는 것을 막고,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확보하는데 있음.
  - ※ 노조법 제81조 제4호 본문에서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금지
  - ※ 단서에서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제24조제4항에 따른 활동을 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하는 행위,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기타 재액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은 예외적으로 허용
- 노조법 제2조 제4호 나목에서 ‘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원조받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고 있으므로, 노동조합이 사용자로부터 경비를 원조받는 행위는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해칠 우려가 큰 것임.

- 그런데, 노조법 제81조 제4호 본문과 단서에서 노조전임자와 근로시간면제자를 구분하고 있으므로, 노조전임자 급여지원 행위는 별도로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저해할 위험성이 있는지 가릴 필요 없이 그 자체로 부당노동행위를 구성한다고 해석됨.
- 따라서 노조전임자 급여지원 행위와 대등하게 규정되어 있는 운영비 원조 행위의 경우에도 이와 마찬가지로 해석할 수 있음.
- 한편,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 단서에서 정한 행위를 벗어나서 주기적이거나 고정적으로 이루어지는 운영비 원조 행위는 노조전임자 급여 지원 행위와 마찬가지로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잃게 할 위험성을 지닌 것으로서, 부당노동행위라고 해석됨.
  - 비록 그 운영비 원조가 노동조합의 적극적인 요구 내지 투쟁으로 얻어진 결과라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을 가지고 달리 볼 것은 아님.
- 단체협약 중 사무보조비 조항이 최소한의 노조사무실과 함께 책상, 의자, 시설 등의 비품 등을 제공받는 것을 넘어 매월 상당한 금액의 돈을 지급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이는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침해할 현저한 위험성이 있다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사무보조비 조항이 노조법 제81조 제4호 단서에서 정한 행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시정명령은 적법함.

### 3. 시사점

- 대법원은 사무보조비 명목으로 매월 상당한 금액의 돈을 노조에 지급하기로 한 단체협약 조항은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시함.
- 특히 “주기적·고정적인 운영비 원조”는 노조의 자주성을 잃게 할 위험이 있어 부당노동행위이며, 노조가 투쟁의 산물로 얻은 것이어도 마찬가지로 판시한 점이 상당한 의미가 있음.
  - ※ 과거 “조합의 자주성을 잃을 위험성이 없는 한”, “투쟁결과로 얻어진 것” 등을 근거로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는 판례가 있었음(대법원 90누6392). 그러나 본 판결은 현행법 하에서는 이러한 취지가 인정될 수 없으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을 명시적으로 밝힌 점에 의미가 있음.

<끝>